

제3장 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⁴⁾

<핵심가치>

-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위원회가 지향하는 핵심가치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모든 인권이 보편적·불가분적·상호의존적·상호연관적임을 인정하며, 사회구성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운영가치>

- 독립성(Independence)
- 전문성(Professionality)
- 다원성(Diversity)
- 투명성(Transparency)
- 책무성(Accountability)
- 합리성(Rationality)
-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제4장 전략적 접근: 핵심 업무 선정기준

제1절 기준의 필요성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일련의 광범위한 권한⁵⁾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후 3년간 일련의 광범위한 인권이슈들과 인권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위원회가 모든 인권

4) 위상발전기획팀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유되던 것들을 개념화하였다. 세부내용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위원회의 업무)

문제에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위원회가 관여할 핵심 업무영역들을 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일관된 선정기준에 따라 여러 중요한 인권이슈들 가운데 어려운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즉 한정된 자원을 최선의 인권보호를 위해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는 본 업무계획기간 동안 위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인권이슈나 인권침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원회가 능력 또는 자원의 부족으로 특정이슈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당이슈가 중요하지 않거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원회와 그 직원들은 핵심 업무 선정기준의 모든 요소들이 철저히 검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2절 선정기준

제5장 핵심 업무 영역

제6장 위원회 10대 전략목표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목표 3. 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 정비
- 목표 4. 인권예방기능과 현장성 강화
- 목표 5. 인권친화적인 권리 구제 서비스 제공
- 목표 6.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 목표 7. 인권 홍보기능 강화
- 목표 8. 국내외 인권관련 기관/단체/개인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 목표 9. 위원회 기능의 통합적 수행
- 목표 10.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위원회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관심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가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이들이 제 권리 행사를 있어 사회적 제약이 많다는 사실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위원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사회권 분야에 대한 개입역량 강화,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 정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의 방법으로 구현될 것이다.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추구하는 인권이 국내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이는 대한

민국 헌법이 “헌법에 의하여 제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제도·정책과 관행이 헌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 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들이 국제 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와 그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주요 재판 및 입법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 협의 및 제도개선” 등의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목표 3. 인권예방기능과 현장성 강화

일단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받게 되며, 회복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때에 따라서는 회복이 전혀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항상 인권 현장과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위원회의 이러한 인식과 노력들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 기능 활성화”, “업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실무차원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목표 4.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 구제와 관련된 모든 행동들이 인권친화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인권친화적인 조사 구제 서비스라 함은, 인권 피해자들이 위원회가 자신들을 위해 해 주기를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모든 조사 구제 절차가 기존의 타 권리 구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 5. 차별시정 기능 강화

지난 해(2005)에 그동안 여성부, 노동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차별시정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조치가 있었다. 위원회는 그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 차별시정에 관한 전담 국가기구가 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차별 문제가 주요한 인권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원회는 차별시정 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지위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의 차별시정 기능 강화를 위해, “차별 금지법 제정”,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 기준 정립”,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체계 구축”, “차별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목표 6.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인권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이는 파리원칙이 국가인권기구의 주요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로도 설명된다.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목표 7. 국내외 인권관련 기관/단체/개인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반 차별의식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증진과 보장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외 정부기관이나 비정부 기구 및 관계 전문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인권시민단체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이들 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심화시켜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는 주요한 협력대상에 국제인권기구, 주요국가의 국가인권기구, 지역 인권기구, 관계 국가기관, 인권시민단체, 인권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목표 8. 위원회 기능의 통합적 수행

목표 9. 위원회 홍보기능의 강화

목표 10. 위원회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제 2 부 전략적 계획

위원회는 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것이다.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역점을 둔 인권정책

첫째, 위원회의 사회권 분야 개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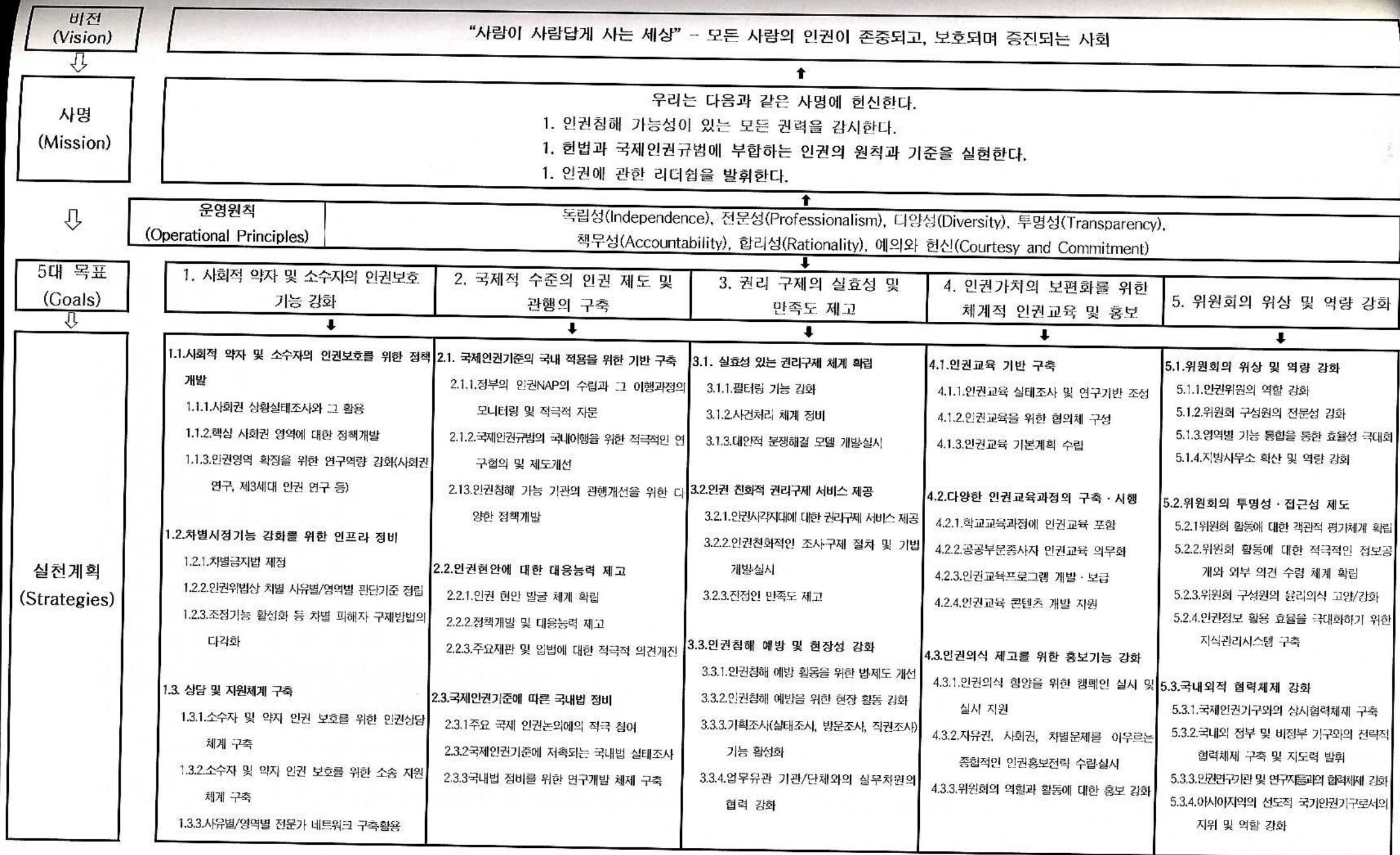
둘째,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정부의 인권NAP 수립 권고와 그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협의 및 제도개선
- 주요 국제 인권논의에의 적극적 참여
- 인권침해 가능기관의 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 주요 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2. 인권피해자 만족도를 높이는 조사·구제

첫째,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제7장 인권위원의 역할과 의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계획 초안(2006년-2008년)

= 목 차 =

1. 업무전략계획(Strategic Plan) 작성 개요
 - 가. 작성목적
 - 나. 작성과정
2. 위원회의 비전(Vision)
3. 위원회의 사명(Mission)
4. 위원회의 운영원칙(Operational Principles)
5. 2기 위원회의 5대 목표(Goals)
6. 실천계획(Strategies)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1. 업무전략계획 작성 개요

가. 작성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01. 5. 24.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차별적 관행들을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동안 낮설어 보였던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회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위원회의 사명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업무전략계획은 이러한 전략계획의 일부로서, 향후 3년간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각 업무영역별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나. 작성 과정

- 발전기획단 활동계획 전원위원회 보고(‘05. 9. 12.)
 -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 팀(업무전략 기획팀, 위상강화 기획팀, 역량강화 기획 팀)을 둠.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팀 구성은 단장이 3개 팀의 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3개 팀의 팀장은 각각 박찬운 인권정책국장, 김형완 상담센터 소장, 나영희 교육협력국장으로 함.
 - 발전기획단 활동시한은 2005. 12. 10.까지 약 3개월로 하며, 3개 팀은 각각 위원회 3개년 업무전략, 위원회 위상 강화, 위원회 역량 강화 기획안을 작성함.
- 발전기획단 구성 및 활동개시('05. 9. 13.)
- 팀 구성 확정(단장 포함 총 25명; 각 팀별 팀장, 간사, 내부팀원 1~3명, 외부위원 5명)
- ※ 붙임 팀 구성 현황 참조
- 팀별 초안 작성 추진('05. 9. 13. ~ 11. 11.)
- 위원회 내부 팀이 초안을 작성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초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각 팀별 팀 전체회의(5~6회) 및 내부팀 회의(10회内外) 실시
 - 단장은 총 6회의 내부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각 팀의 활동 사항을 보고 받고, 전체 발전기획단 활동을 통합·조정
- ※ 발전기획단 모든 활동 내용은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11. 28.)

2. 위원회의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사회-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²⁾”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될 것이다.

3. 위원회의 사명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명³⁾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에 관한 리더쉽을 발휘한다.

※ 정책국 워크숍에서 차별분야 활동을 미션에 포함시킬 필요 제기

4. 위원회의 운영원칙(Operational Principl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sm),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합리성(Rationality),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2) 위원회의 비전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슬로건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주요국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의 핵심적 내용-“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사회”를 결합하였다.

3) 위원회의 사명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본질적 사명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다른 국가기구(사법기관 등)나 혹은 NGO 등과 차별화되는 성격으로부터 도출하였다. 다른 국가기구와 다른 점으로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의 실현”을 그리고 NGO 등과의 차별적 성격으로부터 “인권영역에서의 통합과 조정을 위한 전문성과 리더쉽”을 상정했다.

- 가. 독립성 : 위원회는 국가 혹은 사회의 모든 세력 및 위원회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 나. 전문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와 목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기술을 확보하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투자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편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 다. 다양성 : 위원회는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 자격을 갖추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차이가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며, 갈등의 해결방식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지향한다.
- 라. 투명성 :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위원회 활동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인사·재정 운영의 청렴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책무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인권보호 및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바. 합리성 : 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 인권적 관점을 갖고 접근하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기초로 한다.
- 사. 예의와 헌신 : 위원회는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사명을 달성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성실과 신의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위원회의 사명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인권실현을 위해 헌신한다.

5. 2기 위원회의 5대 목표(Strategic Goals)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목표 3.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 목표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체계적 인권교육 및 홍보
- 목표 5. 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위원회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관심 영역이 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보호해야 할 이들의 권리에는 이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맞서 싸워야 하는 한편 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예를 들면, “빈곤”과 같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오랜 기간동안의 사회적 배제의 결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들이 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들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추구하는 인권이 국내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제도·정책과 관행이 헌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내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이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되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목표 3.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이러한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조사·구제 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조사 과정도 일반적인 조사와는 구분되는 인권 친화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침해 발생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가 고통 받고 있는 인권현장에 밀착하여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전개할 것이다.

목표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가 위원회의 주요 사명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홍보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반의 구축과,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종합적인 인권홍보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회구성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 5. 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위헌의 시비 속에서도 파리원칙이 천명한 국가인권기구의 정체성인 무소속·독립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부 내에서는 전례가 없던 무소속 독립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식된 측면이 있지만, 대국민 위원회의 위상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의 지적과 비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인권문제를 적극적·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믿음직한 대안적 권리구제기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법, 제도, 정책 등) 발전을 이끄는 기관, 인권 영역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인권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위상과 이에 걸 맞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7. 실천계획(Strategies)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1.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 1.1.1. 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 1.1.2.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 1.1.3. 인권영역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1.2. 차별시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1.2.1. 차별금지법 제정
- 1.2.2.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1.3.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 1.3.1.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체계 구축
- 1.3.2. 소송지원 체계 구축
- 1.3.3.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세부목표

1.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이 논리적인 기반과 사회적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권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는 그동안 위원회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지 못한 분야이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사회권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몇몇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1.1.1.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그 활용

인권위법에 의해 위원회에 위임된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효하다.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세상에 알림으

로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권상의 문제점과 그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을 제공한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조사·연구는 그 것들에 기초하여 개발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인 설득력과 자신감을 제공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념하고자 한다. 첫째는 향후 3년간 사회권 분야의 인권상황실태조사에 주력한다. 둘째, 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 개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하에 실시한다. 셋째, 사전에 설정된 정책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분야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의 결과가 위원회 내부의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 전략기획에 기초하여 연간 업무계획 수립 시 해당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실시한다.

1.1.2.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자유권 분야의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말은 흔히 제2세대 인권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나 발전권, 환경권 등과 같은 제3세대 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개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권논의에서 흔히 언급되는 바와 같이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는 위원회가 활동해야 할 인권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인권의 영역, 즉 위원회가 관여하는 활동범위를 제2세대 인권 및 제3세대 인권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인권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내에서 이들 권리의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활동들을 모색하는 것이며, 특히, 이들 권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실에서 이행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1.1.3.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역량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진 위원회로서 일시적으로 모든 분야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위원회는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 붙임 “인권관련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모델” 참조

세부목표

1.2. 차별시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이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차별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위원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그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위원회 조사관들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사건을 다룰에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기능 활성화 등 보다 다양한 피해자 구제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계획

1.2.1. 차별금지법 제정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 그 노력의 결과로 법 초안이 완성단계에 있다. 이 초안은 사회 구성원의 차별의식을 개선하고, 차별행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많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 를 희망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2.2.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인권위법 제2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 19개 항목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결정예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위원회로서 제기된 특정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 결정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인권이 갖는 추론적인 성격에 비추어 반드시 잘 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원회는 위원회가 판단을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판단기준들을 사전에 설정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최대한 객관화되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인권위법 제42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금까지 이 조정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는 위원회의 조사·구제 활동이 주로 조사중심의 분쟁해결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진정 사건 등을 다룸에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 무엇인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조정기능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방법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방법 들을 개발·적용하고자 한다.

세부목표

1.3.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위원회가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그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위원회의 본질적 사명 중에 하나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위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들(예: 진정함 설치 및 면전진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많은 분야(예: 구금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에 접근하여 성과 들을 일궈왔다. 하지만 아직도 위원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분야들이 존재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이미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인권현장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의 경우,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법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에도 주목 할 것이다.

실천계획

1.3.1. 소수자 및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상담 체계 구축

권리구제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순회상담버스 운영 및 인권현장 상담사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취약계층에 적합한 상담기법을 개발, 실시하도록 한다.

1.3.2.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많은 기관/단체/개인들과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협력관계의 일환으로 인권침해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모니터링 및 지원을 위한 소통경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1.3.3.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소송지원 체계 구축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데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선별하여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위원회가 도움을 줄으로써 차별행위를 방지를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차별행위 피해자의 소송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 2.1.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협의 및 제도개선
- 2.1.3. 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2.2.1. 인권 현안 빌굴 체계 확립
-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 2.2.3. 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개진

2.3.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

- 2.3.1. 주요 국제 인권논의에의 적극 참여
- 2.3.2. 국제인권기준에 저촉되는 국내법 실태조사
- 2.3.3. 국내법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 체제 구축

세부목표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수용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첨경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그 기반구축을 업무의 주요 목표로 삼아 매진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국제사회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의

수립은 한국 사회의 인권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 계획이 정부에 의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NAP의 수립과정과 그 이행과정에서 정부의 자문역할을 할 것이며 그 내용과 이행절차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2.1.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협의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에서 완전하게 이행되는 데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인권조약이 요구하는 인권수준과 우리의 제도 및 현실이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를 정확히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위원회와 관련기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지속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2.1.3. 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국제적 수준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을 심도 있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패턴과 유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맞는 제도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관행의 개선은 일회적인 정책권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관심과 실천 가능한 대안의 제시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

세부목표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위원회는 매일 같이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위원회는 살아 있는 인권보호의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계획

2.2.1. 인권현안 발굴 체계 확립

수다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것에 위원회가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문제에 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위원회의 역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위원회는 그 내에 인권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위원회가 인권현안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위원회의 인권정책기능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 바깥의 요구에 의한 인권정책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인권정책의 수요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굴하는 능력과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2.2.3. 주요 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위원회가 특정한 인권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인권사건이 사법부의 심리 중에 있을 때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인권위법에 명시된 이 소중한 기능을 통해 위원회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인권의 가치를 우리의 사법부에 전달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제·개정 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본적인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

세부목표

2.3. 국제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

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제도적 정비로 나타난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제도의 구축은 결국 국내법의 정비로 귀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실천계획

2.3.1. 주요 국제 인권논의에의 적극 참여

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의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일방적으로 주는 규범에만 만족하지 말고 책임 있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의 형성에도 선도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2.3.2. 국제인권기준에 저촉되는 국내법 실태조사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조약이 얼마나 국내에서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관련 법령의 문제점이 확연히 들어날 것이며, 우리의 인권정책의 방향이 들어날 것이다.

2.3.3. 국내법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 체제 구축

국제인권기준에 우리의 국내법령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관련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연대가 필요하고 이들의 연구를 한 곳에 모을 시스템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목표 3.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3.1.1. 필터링 기능 강화

3.1.2. 사건처리 체계 정비

3.1.3.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3.2. 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3.2.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3.2.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실시

3.2.3. 진정인 만족도 제고

3.3.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3.3.1.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3.3.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3.3.3.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활성화

3.3.4.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실무차원의 협력 강화

세부목표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위원회가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차별성 있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빠르고, 쉽고, 값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권리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인권침해 사건은 유형과 내용, 형식에 있어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되는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적합한 구제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고 값싼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위원회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 증진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효율적이며 상생적 갈등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권리구제의 영향과 효과가 최대한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3.1.1. 필터링 기능 강화

진정사건에 대해 전방위적인 상담 및 기초조사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관문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직권조사, 기획조사 역량을 집중, 권리구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상담센터에서 진정을 접수한 후 사건 유형을 분류하여 조사국으로 송부하기 이전 단계에서 명백한 각하사건의 경우 접수를 배제하거나 신속하게 각하를 결정, 조사관별로 적정 사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1.2. 사건처리 체계 정비

사건의 접수 이후 기초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접수된 권리구제 사안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처리한 다양한 유형의 진정사건들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 조사구제 매뉴얼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1.3.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 및 실시

차별사건 및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권리구제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사법적, 재판적 분쟁해결방식에서 벗어난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조직적

역량을 축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특히 사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정, 중재 양식은 조정 본연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 NI들의 모델과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하도록 한다.

세부목표

3.2.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사 진행 및 실질적인 인용률 제고로 진정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진정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3.2.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그동안 위원회는 제기되는 진정사건 처리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나치게 교정시설 수용자, 형사절차 과정에 있는 피의자들의 인권문제에 편중되게 위원회 역량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제2기 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정신보건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 및 의료시설 등에 인력을 배분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3.2.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개발 실시

다른 민원처리기관과는 달리 국민 인권 보호의 최 일선에 서야 할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상처와 분노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보다 인권친화적인 조사와 권리구제 기법 등을 개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조사과정에서도 공감적 경청 등의 상담기법을 활용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의 회복과 더불어 심리적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관료적 국가기관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한 권리구제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다층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3.2.3. 진정인 만족도 제고

진정사건의 자연처리는 진정이의 주요 불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기관에게도 장기간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경미한 인권침해 사건, 빈번하게 반복되는 유사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현장해결형 조사 시스템을 대폭 도입하여 기간 단축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진정인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처리에 급급하여 진정 당사자들에게 다소 불친절하고, 권위적 태도를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경청하고 헌신하는 조사태도를 지향하여 진정 당사자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조사 관행을 정립하고, 진정 경과 인터넷 안내 시스템을 제공하여 진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덧붙여, 사건처리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수립하여 면밀한 평가·환류를 통한 진정인 만족도 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세부목표

3.3.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개별 진정사건 처리만으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경 등 어느 정도 진정사건 처리 경험을 통하여 인권침해 관련 구조적 문제가 파악된 분야는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를 활성화 하여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관행, 제도,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사무소, 지역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인권침해 현장에서 관련 종사자들 및 수용자들과의 대화, 교육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3.3.1.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

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권조사, 방문조사, 실태조사 실시권한 등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향후 3년간 이러한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시설, 병영시설,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 등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이를 분야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3.3.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이 제기되기 전에라도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파악, 현장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 인권침해 상황 해소·완화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을 강화할 나갈 것이다. 또한 진정제기자체가 어려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3.3.3. 기획조사(실태·방문·직권 조사) 기능 활성화

그동안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영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도별 기획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실시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실태조사, 방문조사 등이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충분한 관심을 집중하지 못했던 군대내 인권, 다수인 보호시설 분야의 경우 기획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권침해 심각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권고하도록 한다.

3.3.4. 업무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실무차원의 협력강화

인권보호와 그 수준의 향상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피진정기관들의 긍정적 변화를 통하여 이룩된다. 근래, 법무부 인권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인권전담

부서와의 협조는 물론이고, 영역별로 인권 관련 진정사건 해결 과정이나 인권위
권고 후 그 이행과정에서 관련 피진정기관 및 필요시 인권단체까지 포함된 실무
급 협의·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형식적인 수용이나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수용,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목표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 4.1.2.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 4.1.3.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4.2.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의 구축·시행

-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 4.2.2. 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 4.2.3.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4.2.4.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4.3.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기능 강화

- 4.3.1.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실시 지원
- 4.3.2. 자유권, 사회권, 차별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홍보전략 수립·실시
- 4.3.3.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세부목표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위원회가 2005년도에 전국 15세 이상 성인남녀 1,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응답자의 5.3%만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가 매우 적다고 응답했다. 이 통계수치는 인권 친화적 문화화산을 위해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사회구성원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인권교육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인권교육 활성화와 질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교육정책수립과 교육 실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태조사로 인권교육기회 보급의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교육 관련 연구 과제 개발 지원으로 정책 입안 근거 마련 및 인권 교육 연구 및 활동기반을 구축 한다

4.1.2.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인권교육 전문가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수립 및 인권교육 활동에 관한 열린 협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워크숍, 메일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인권교육 정보 제공 등 의 지원을 통해 인권교육 전문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 한다

4.1.3.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 인권교육 실시 및 진흥을 위해 주기별로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교육이 정착·활성화 될 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UN에서도 인권교육10개년계획(1995-2004)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한 다음 시기별로 인권교육 집중강화 영역을 선택하여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인권교육원 설립이나 인권교육법 제정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본 계획 수립을 각 해당기관에 권고 한다

세부목표 4.2.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의 구축 및 시행

인권교육 실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속적, 체계적인 인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고 시급하다고 한다. 대상별, 영역별, 주제별, 기관별로 체계적으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인적 및 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계획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것은 UN 인권교육10개년계획(1995-2004) 및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각급학교에 인권교육과정을 필수과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급학교별 인권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학급학교에서 인권교육 과정이 운영되도록 협의·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모니터링 하며, 인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친화적인 학교 분위기속에서 인권을 체험하도록 인권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4.2.2.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법집행 공무원, 군대와 같은 특수기관,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다수인 시설 종사자, 교원, 우리사회의 여론 지도층(언론인, 예술인, 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는 UN 인권교육10개년계획(1995-2004)의 주요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경우 인권교육 이수를 필수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직교육 및 각종 직무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교육과정이 설치되고 운영되도록 협의 지원하고, 인권교육 우선집단, 취약집단을 위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지원 한다

4.2.3.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권교육은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인권적인 교육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을 다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의 전 프로세스가 인권적인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고, 인권교육다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와 교육자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우선 집중대상별, 수준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자(trainer's train program)를 교육하는 과정을 운영 한다

세부목표 4.3.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기능 강화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친화적인 문화확산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의 홍보활동은 국민들의 인권의식향상,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 이를 통한 위원회의 위상강화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전략화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실천계획

4.3.1.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실시 및 지원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인권 침해 현장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통로 및 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대상 혹은 인권취약계층을 위해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사이버공간 활용)를 개발·보급하고, 인권 현안 중심으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예 단체와의 캠페인 행사, 어린이인권위원회, 모의인권국민위원회)을 관련자들과 협력하여 조직하여, 인권옹호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4.3.2. 위원회 차원의 전방위적 홍보전략계획 수립 및 실시

위원회 차원의 전방위적 홍보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 다양하게 이뤄져왔던 위원회의 홍보활동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이뤄온 구체적인 변화, 이를 통해 달라진 개개인의 삶에 중점을 두어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국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위원회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또한 위원회의 공간을 중요한 홍보 도구화하여 위원회를 방문하는 누구든지 방문만으로도 위원회의 활동을 이해하고,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목표 5. 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5.1. 위원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

- 5.1.1. 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인식 공유
- 5.1.2.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 5.1.3. 영역별 기능통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5.1.4.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5.1.5. 지방사무소 확산 및 역량 강화

5.2. 위원회의 투명성·접근성 제도

- 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확립
-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외부 의견 수렴 체계 확립
- 5.2.3. 위원회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양/강화
- 5.2.4. 인권정보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5.3. 국내외적 협력체제 강화

-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협력체제 구축
-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및 지도력 발휘
- 5.3.3. 인권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제 강화
- 5.3.4. 아시아지역의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 강화

세부목표 5.1. 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외부환경과의 적절하고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위원회가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은 더욱 공고히 하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들은 위원회법상 명시된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및 위원회의 각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수정, 보완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 및 권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5.1.1. 위원회의 비전과 역할 인식 공유

위원회의 지도력은 위원회의 장기적인 비전과 이에 대한 위원회 및 구성원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조직구성원의 합의와 헌신을 이끌어내어 위원회의 내부적 지지기반을 튼실히 하고, 이러한 내부적 단합된 지지기반을 토대로 대외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리더십은 위원회 정체성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며, 해마다 예산수립 전에 워크샵 등을 통해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직원들이 함께 위원회의 비전을 검토하고, 차년도 사업방향 및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리더십 전략 워크샵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 리더십 및 구성원 전체가 조직의 비전 및 차년도 사업 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도출하고, 구성원의 헌신과 역량 집중을 유도한다.

5.1.2.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5.1.3. 영역별 기능 통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위원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국·과 체제를 팀 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새로 구성될 팀은 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진정사건의 처리, 관련 정책의 수립·권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수행하는 자기 완결적 성격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팀 제도의 성공적으로 정착으로 사건처리와 정책의 연계 등 영역별 기능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1.4.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표준화 모듈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업무상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업무의 효율성, 계속성,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효율적 업무 매체로서 매뉴얼을 개발 하되, 종래의 직무별 통합 매뉴얼은 물론 사건유형별 매뉴얼과 같은 업무유형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2006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핵심역량요소를 도출한 후,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훈련 시행을 총괄할 교육전담기구로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내·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단없이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한다.

5.1.3. 운영체계 구축

위원회가 무소속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시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독립된 인권전담기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실상부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관행적 운영 체계를 정비하도록 한다. 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을 검토,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대정부 관계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의 독립적인 청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5.1.4. 지방사무소 확산 및 역량 강화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인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위원회에 대한 지지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역사무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강화, 지역의 인권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연락체계 활성화, 지역사무소를 통한 해당 지자체 및 지역NGO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지역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NGO와의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의 인권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위원회, 지역사무소, 인권NGO 및 시민사회단체 각각의 역할을 인식, 조정을 통해 지역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이후 대구 등 주요거점 도시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무소 신설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 및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체계(MOU 등)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에 자극을 촉발한다.

세부목표 5.2. 위원회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윤리성 및 투명성을 요구, 통제하여 외부기관(예: 감사원)의 감독 및 통제를 뛰어넘는 수준의 윤리성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성 확보 기반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

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확립

위원회의 대·내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하여 대국민, 전문가 집단,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활동, 위상, 이미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외부 의견수렴체계 확립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형성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잘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의 공보활동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차원의 전방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대상 간담회 및 브리핑 수시운영, 웹진과 메일링 리스트의 효과적인 활용, 쌍방향 홍보물 제작, 국민참여 프로그램(명예 인권위원, 시민인권조사관, 청소년 인권모니터단, 위원회 평가단 등)을 개발 운영하고자 한다.

5.2.3. 위원회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양/강화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윤리성 및 투명성을 요구, 통제하여 외부기관(예: 감사원)의 감독 및 통제를 뛰어넘는 수준의 윤리성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성 확보 기반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구성원으로서 인권적 교양과 품위 유지, 업무 태도와 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고양하고 구성원들이 위원회의 일원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 또는 구성원들의 윤리성에 대한 도전이 심할 수 있는 대외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한다.

5.2.4. 인권정보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부서 간 업무의 효과적인 연계와 개인이 소장한 정보를 조직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의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아울러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 분류 카테고리를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지도(Knowledge Map)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목표 5.3. 국내외적 협력체제 강화

위원회의 역할은은 위원회의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 인권·시민사회 단체, 시장, 국제사회 등과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관련기관과의 상시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협력체제 강화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집단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의 효과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역화, 세계화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

국제사회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국내의 인권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국제활동을 통한 국내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인권이슈의 국내 소개 및 활발한 인적교류 활동을 통해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UN 및 UN관련 기구,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이 모여있는 제네바 또는 뉴욕에 연락관(international Liaison)을 파견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국내의 인권현안을 국제화하도록 하고, 주요 국제기구에 위원회 직원을 인턴으로 파견하여 주요 인권 이슈영역의 흐름, 주요 기관들의 동향, 인권정보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및 지도력 발휘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도, 정책적 체계 확립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국내 인권 현안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인권·시민단체들의 자문을 구하고, 위원회와 NGO간의 역할분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또한 향후 차별행위와 관련한 위원회 진정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성별,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고용상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위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차별 예방 지침서(guideline) 개발, 민간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차별 예방 교육 실시, 인권 친화 기업 발굴 및 선정, 차별예방협의회 구성 등을 계획하고자 한다.

5.3.3. 인권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제 강화

대학, 인권관련 학계와의 연구용역 사업 추진 및 인권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위원회와 인권관련 연구 그룹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원회의 이론적, 학문적 토대를 발전시킨다.

5.3.4. 아시아지역의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선두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위상을 증진한다. 국내의 인권 현안 가운데 외국 NI들과 공동 추진할 만한 이슈(예 : 인신매매, 청소년 노동권 등)를 선정하여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한다.